



국민건강보험공단



수신자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등록기준 변경사항 안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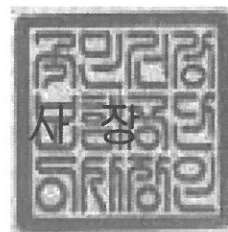
1. 항상 건강보험 업무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리며,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관련 근거
 - 가. 법령 제15270호(2017.12.19.) 「장애인복지법」
 - 나. 보건복지부령 제606호(2018.12.28.)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
 - 다.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-788(2019.2.7.) “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정보 연계기관 협조사항 송부”
3. 위와 관련, 장애등급 폐지 및 장애정도 신설(2019.7.1. 시행)에 따른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등록기준 및 필수검사조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가.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등록기준(검사항목 및 필수검사조합) 변경
 - 장애등급(1~3급)→ ‘심한 장애’ / 장애등급(4~6급)→ ‘심하지 않은 장애’ 로 표기 변경
 - 총 113개 질환(희귀질환 84개, 극 희귀질환 26개, 중증난치질환 3개)
 - 나. 세부사항: “붙임” 참조

※ 변경되는 희귀질환·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등록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 홈페이지(뉴스·소식/새소식) 및 요양기관정보마당(공지사항)에 게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- 붙임 1. [별표4] 희귀질환군 산정특례 등록기준 및 필수검사항목 1부.
2. [별표4의2] 중증난치질환군 산정특례 등록기준 및 필수검사항목 1부. 끝.



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



수신자 대한병원협회장, 대한의사협회장

주임

손지민

팀장

채은영

부장

전결 7/2

양호

협조자

시행 산정특례운영부-2354 (2019.7.2.) 접수

()

우 26462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1, 리젠트파크 5층 (반곡동)

/ <http://www.nhis.or.kr>

전화 033-736-1824

전송 033-749-9616

/ 160243@nhis.or.kr

/ 공개